개 인 정 보 보 호 위 원 회 심의·의결

의 안 번 호 제2023-013-175호

안 건명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의 결 연 월 일 2023. 7. 26.

주 문

피심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과 징 금 : 16,250,000원

나. 납부기한 :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기한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 대리점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이며 일반현황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의 일반현황 >

피심인명	사업자 등 록번호	대표자 성명	주소	종업원 수

Ⅱ. 사실조사 결과

1. 조사 배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피심인의 개인정보 유출 신고('23.3.21.)에 따라 개인정보 관리실태에 대한 사실조사('23.3.21. ~ 5.23.)를 실시하였으며, 피심인의 보호법규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 사실

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사실관계

1) 유출규모 및 항목

비영리 법인 임원 및 회원 100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며, 임원예정자 11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등록지, 주소, 주요약력, 연락처와 회원 89명의 성명, 주소, 직업, 전화번호가 포함되어 있다.

* 수집근거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27조의2 1호, 2호

2) 유출 인지 및 대응

일시	I	피심인의 유출인지·대응 내용	
'23.3.20.	10:00	▶ 기자가 정보공개포털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법인 설립 허가 문서가 공개되어 열람 가능하다고, 도청에 신고하여 개인정보 <u>유출 사실을 인지</u>	
10:12		▶ 결재문서 관리정보를 '부분공개'로 수정	
'23.3.21.	17:53	▶ 개인정보 보호 종합포털에 <u>유출 신고</u>	
'23.3.22.		 ▶ 정보주체 96명에게 유출사실 통보(문자 및 유선) * 미통지 4명은 연락처 오류로 미수신 → 1명은 사망, 3명은 추가 통지 완료(5.22) * 조사일 '23.5.23. 현재까지 정보주체의 피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됨 	

3) 유출경위

피심인은 소속 직원의 실수로 문서의 공개 여부를 '대국민 공개'로 설정한 채 상신하였고, 그대로 결재가 완료(국장 전결)된 후, 정보공개포털에 원문이 공개되었으며, 허가 문서의 첨부파일에는 임원예정자 및 회원 명단이 포함되어 있었다.

※ 국장급 이상 전결 문서 중 대국민 공개 문서는 정보공개포털에 원문이 공개됨

다. 개인정보의 취급·운영 관련 사실관계

1)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피심인은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PDF파일)" 문서에 포함된 주민등록 번호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고 기안 및 결재 완료하여, 해당 문서가 정보공개포털에 공개되게 한 사실이 있으며,

기안문의 공개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고 '대국민 공개'로 설정하여, 열람 권한이 없는 자에게 임원예정자 및 회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한 사실이 있다.

*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6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는 실수로 비공개 설정하지 않음

3.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3. 6. 1. 피심인에게 예정된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서를 송부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23. 6. 16.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Ⅲ. 위법성 판단

1. 고유식별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한 행위

가. 관련 법 규정

보호법 제24조제3항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제2호) 및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제3호)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 2020-2호, 이하 '고시') 제6조제3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중인 개인정보가인터넷 홈페이지, P2P, 공유설정, 공개된 무선망 이용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업무용 컴퓨터,모바일 기기 및 관리용 단말기 등에 접근 통제 등에 관한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제7조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비밀번호,생체인식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하거나 보조저장매체등을 통하여 전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암호화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있다.

나. 위법성 판단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유출 등이 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취급 중인 개인정보가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접근통제 등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나,

피심인이 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문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고, 기안문의 공개범위를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아 및 100명의 개인정보가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유출되게 한 행위는 보호법 제24조제3항, 시행령 제30조제1항, 고시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위반에 해당한다.

Ⅳ. 처분 및 결정

1. 과징금 부과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고, 보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피심인의 보호법 위반에 대해 같은 법 제34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고시 제20224호, 2022.10.20., 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가. 기준금액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1의3]은 고의·중과실·경과실 여부 및 유출 주민등록번호 규모에 따라 산정기준액을 규정하고 있고, 피심인은 경과실로 인하여 10만 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었으므로, '일반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 원을 적용한다.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의2 [별표 1의3] >

위반 정도	산정 기준액	비고	
매우 중대한	2어 드워마.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도난	
위반행위	3억 5천만 원	유출·변조 또는 훼손(이하 '분실 등'이라 한다)된 경우	
중대한	2억 3천만 원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10만 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	
위반행위	2월 3선단 편	우 및 경과실로 인하여 10만건 이상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우	
일반 위반행위	1억 원	경과실로 인하여 10만 건 미만의 주민등록번호가 분실 등이 된 경우	

나. 1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1차 조정)는 "1차 조정금액은 산정기준액에 따라 <1차 조정 기준표>에서 정한 1차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1차 조정 비율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제5조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6점에 해당하므로, <1차 조정기준표>에 따라 기준금액의 35%인 3,500만 원을 감경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 <u>과점수</u> 고려사항 비중		3점	2점	1점
안 전 성 확 보 조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0.2		주민등록번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한 가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부실하게 한 경우 1. <u>접근통제</u> 2. 접근권한의 관리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암호화	0.2	주민등록번호의 송신·전달·저장 시 이를 암호화 하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한 암호화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지 않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보안 프로그램		악성프로그램 등을 방지·치료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지 않은 경우	보안프로그램에 대한 업데이트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지 않은 경우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접속기록의 보관 등	0.2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변조 등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는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거나 잠금장치를 하지 않은 경우	· ·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피해 방지	0.2	알게 된 때로부터 5일	된 때로부터 5일 이내에 다음	3점 또는 2점에
후속 조치 등	0.2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각 호의 조치 사항 중 두 가지	해당되지 않는 경우
		모두 하지 아니한 경우	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 1차 조정 기준표 >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1차 조정 비율
2.5이상	+100분의 50
2.3이상 2.5미만	+100분의 35
2.1이상 2.3미만	+100분의 20
1.9이상 2.1미만	-
1.7이상 1.9미만	-100분의 20
1.5이상 1.7미만	-100분의 35
1.5미만	-100분의 50

다. 2차 조정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2차 조정)는 "2차 조정금액은 1차 조정된 금액에 <2차 조정 기준표>에서 정한 2차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한다. 2차 조정 비율은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기준 제6조의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가 1.2점에 해당하므로, <2차 조정기준표>에 따라 기준금액의 50%인 3,250만 원을 감경한다.

< 세부평가 기준표 >

부 ⁻ 고려사항	<u> </u>	3점	2점	1점
위반기간	0.2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	0.2	최근 3년 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요축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조사협조	0.2	위반행위 조사 시 조사기간내 자료 미제출, 조사자료 은폐 등 조사방해의 부당성이 현저히 큰 경우	I조사자료 으폐 등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차 피해	0.2	위반행위로 인해 보이스 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l끠싱 능 2자 끠해 말생알	3점 또는 2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	0.2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직원교육을 하거나 표창을 받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상당히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노력이 현저히 큰 경우

^{*} 피심인은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정비, 전직원 대상 개인정보 교육 매년 실시 등

< 2차 조정 기준표 >

세부평가 기준표에 따른 산정 점수	2차 조정 비율	
2.5이상	+100분의 50	
2.1이상 2.5미만	+100분의 25	
1.7이상 2.1미만	-	
1.3이상 1.7미만	-100분의 25	
1.3미만	-100분의 50	

라. 부과과징금의 결정

보호법 제34조의2제1항은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단서로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부과과징금의 결정)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위반행위자가속한 시장·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2차 조정된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금액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제1항), 정보주체

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인 경우 과징금을 면제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고가 '담당 직원이 문서를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은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했다' 하더라도, 유출된 해당 PDF 파일은 보호법이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서 과징금 면제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다만, 유출에 따른 정보주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경미한 경우로서 사소한 부주의로 유출된 점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경제적·비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아니하였거나 취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과징금 부과기준 제8조제1항제4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차 조정된 금액의 50%인 1,625만 원을 감경한다.

마. 최종 과징금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기준금액에서 1차·2차 조정 및 부과과징금의 결정을 거쳐 총 1.62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기준 금액	1차 조정	2차 조정	부과 과징금 결정	최종 과징금
1억원	3,500만 원	3,250만 원	3,250만 원	
일반 위반행위 ※ 10만 건 미만	1차 산정점수 1.6점 ⇒ 35%(3,500만 원) 감경	2차 산정점수 1.2점 ⇒ 50%(3,250만 원) 감경	2차 조정금액이 과중하다고 인정 ⇒ 50%(1,625만 원) 감경	1,625만 원

2. 과태료 미부과

보호법 제76조(과대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는 "제75조의 과대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는 같은 법 제75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 [별표2]「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유에 해당하나, 보호법 제7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V. 결론

피심인의 보호법 제24조제3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과징금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 및 「행정소송법」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023년 7월 26일

- 위원장 고학수 (서명)
- 부위원장 최장혁 (서명)
- 위 원 강정화 (서명)
- 위 원 고성학 (서명)
- 위 원 백대용 (서명)
- 위 원 서종식 (서명)
- 위 원 염흥열 (서명)
- 위 원 이희정 (서명)
- 위 원 지성우 (서명)